

의 건 서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,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,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로 지정한 후,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,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,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, 도시계획입안권자인,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의결하였다.

다 음

1. 종합운동장의 기능이 각 시설들간의 직·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범용성 및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, 가. 사업비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임
- ① 토지보상가(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)
2만5천평×100만원 = 250억원으로, 야구장 건설비와 맞먹음.
⇒ 자연녹지, 국유지, 사유지를 활용, 이용계획 세워야 타당할 것임.
 - ② 전국 야구경기장 현황을 보면, 울산광역시, 강원도(춘천) 등, 대도시도 야구경기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중·소도시에는 전무한 상태이고, 현재 야구장건설계획을 가진 도시도 없음.
⇒ 우리시의 모든 여건상 야구장 건설은 시기상조임으로, 도시계획상 부지선정은 적정치 않음.
- 나. 특정지구에 운동장 시설이 밀집된 경우
- ① 주차공간 부족
동시에 여러 경기장을 운영하다보면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
⇒ 이는 운동장 주변의 송정동, 광평동 일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 내지 파괴하는 것임.

② 각종 운동경기 및 행사시

진입도로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완전통제 및 정체로 교통혼잡을 초래 ⇒ 주변도로까지 교통흐름에 방해 요소가 됨.

현재) 종합운동장, 박정희체육관의 동시 사용에도 교통대란 발생.

이에, 야구장까지 합세하면 교통혼잡은 가중된다는 것은 당연함.

다. 민원해결 측면에서

197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, 26년 간이나(변경 결정된 후 17년간) 재산권행사의 침해를 받아온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,

2. 만약,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할 경우에는, 종합운동장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여, 선보상 후시설공사 방안 등, 청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,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.

2004. 4. 30.

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

도시계획법(신)

전문개정 2000. 1. 28, 법률 제6243호

제41조(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) 시행일 2000. 7. 1

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

그 결정·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
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

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·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
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